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3억원
- 지출액 : 3억원
- 이월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0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0%가 발생하였음.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손해배상금 등	배상금등	300,000	300,000	300,000	0	0

II . 검토의견

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예비비 지출

- 재무국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2018.12.26.)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19.4.20.) 내용을 수용하고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억원을 지출(2109.5.31.)하였음.

【손해배상 소송 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14492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
- 청구내용 : 재무과 직원(故 이○○, '15.11 사망)의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임을 주장하며 직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당 사 자 : 원고: 이○○ 외 1(고인의 부모), 피고: 서울특별시
- 배 상 금 : 3억원(배상청구액 539,420,066원)

<2019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 원인행위	지출 결의액	지출액	지출잔액
손해배상금 지급	배상금 등 (305)	300,000,000 (2019.5.29.)	300,000,000 (2019.5.30.)	300,000,000 (2019.5.31.)	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예비비 지출 경위 〉

- 2015.12.28. : 사고 발생일(입사 후 11개월 근무)
- 2018.12.26. : 유가족 서울시 상대로 소 제기(2018.12.26.)
- 2019. 1. 2. : 손해배상 조정신청(신청금액 120,000천원)
- 2019. 2.19. : 1차 조정기일(답변서 제출 후 조정절차 진행)
- 2019. 3.26. : 2차 조정기일(강제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금액 539,420천원→ 300,000천원)
- 2019. 4. 6. : 강제조정결정문 송달(총 300,000천원 지급 결정)
- 2019. 4.20. : 강제조정 결정 확정
- 2019. 5. 9. :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재무과)
- 2019. 5.14.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019. 5.31. : 예비비 집행
- 2019. 6.18. : 제287회 정례회 시 예비비 사용 보고

※ 지급기한(2019.5.31.)이 추가경정예산편성(2019.6) 전으로 예비비 사용

- 본 소송 경위는, 2015년 사망(2015.12.28.)한 재무국 소속 직원의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원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울시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약 5억 4천만원)의 소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2018.12.26.)한 것임.

○ 故 이○○ 주무관(1975년생) 사건 경위

- 2015.01.23~12.28 재무국 재무과(지방행정주사보)
- 2015.12.28 사망(11개월 근무)

○ 지원내역 : 사망위로금 및 유족보상금 등 142,935천원

- 서울시 : 67,698천원(사망위로금 24,500천원, 직원 성금 43,198천원)
- 공무원연금공단 : 75,237천원(유족보상금) * 유족연금 별도(월 676천원)

- 이에 대하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2019.4.6., 본인 과실 40% 인정 반영하여 3억원)하고, 재무국은 자문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확정(2019.4.20.)되었는바, 연 15%의 자연이자 발생 등 사유로 판결금 적기 지급을 위해 본 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강제조정 결정문 >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3억원을 2019.5.31.까지 지급한다. 이를 지체한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 이 결정 내용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강제조정 결정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정○○ 변호사 >

-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감액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
 - 강제조정금액 산정의 전제가 된 고인의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익 부분은 대체로 적정
 - 본안 소송 진행시 감액받을 금액이 금번 조정결정금액과 차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본안 소송 진행시 원고측이 고인의 상급자와 동료 등을 증인으로 신청시 직원들이 받게 될 정신적 압박 및 스트레스, 서울시 직장문화에 악영향 우려
 - 증인신문이나 피고 대리인 진술시 불가피하게 서울시 책임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과실상계 사유 및 인정비율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이라 장담할 수 없고, 고인에게 동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면 과실상계비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음. 이에 항소를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추가비용 지출 예상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¹⁾)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통상 소송사건의 경우 발생 및

-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료시기와 결정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판결금 지급 기한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이전인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다만, 사망위로금,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진행된 본 소송 경과를 보면, 본 사건 결정은 유사사건 법원 강제조정제에 따른 것으로, 본 사건의 쟁점인 업무과중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살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고찰하고, 무엇보다 일시적 미봉책 남발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조직문화 조성에 서울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고 이전 유사한 직원 사망사건(故 최○○)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청구액 5억8천만원 중 3억5천만원 지급 결정) 선례가 있음.

※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취지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무국은 본 예비비를 지출(2019.5.31.)하고, 제2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이행(2019.6.18.)하였음.

※ 한편, 2019회계 결산서를 보면, 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본 예비비 지출에 따라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에 '손해배상금 지급'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사업구조화를 추가하였음.

-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6페이지
-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 재무국 2019회계 재무국 결산서 >

- 사업별조서

과목 (조 직 - 사 업)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집행잔액 ㉕=㉓-㉔-㉖-㉗-㉘				
		전년도이월액	이용	수위다목적비			계 ㉕=㉓+㉔ +㉖+㉗+㉘+㉙	보조금 정산잔액㉖	예산결감액㉗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㉘	
		예비비사용액	전용	변경				낙찰차액㉖	지출잔액㉔	예비비㉙	
재무국 재무과	742,776,994,000				743,076,994,000	705,188,040,088	37,888,953,912				336,507,000
		300,000,000						1,680,400	37,550,766,512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6,301,531,000				6,601,531,000	3,433,610,570	3,167,920,430				336,507,000
		300,000,000						1,402,400	2,830,011,030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057,444,000				6,357,444,000	3,239,420,570	3,118,023,430				336,507,000
		300,000,000						909,400	2,780,607,03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53,718,000				1,053,718,000	1,031,575,965	22,142,035				
								340,900	21,801,135		
2018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2,015,000				232,015,000	201,996,515	30,018,485				
								568,500	29,449,98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000				40,053,000	40,053,000					
수인종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6,507,000				336,507,000		336,507,000				336,507,0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4,395,151,000				4,395,151,000	1,665,795,090	2,729,355,910				
									2,729,355,910		
손해배상금 지급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 1>

예비비 지출요구서(재무국)

(단위 : 천원)

조직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 잔액 ①-②	금회 소요액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재무국	회계 및 계약 제도 개선	회계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손해 배상금 지급	배상금 (305)	배상금등 (01)	-	-	-	300,000	300,000	

○ **예비비 지출 사유**

-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조정신청('19.1.2)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 조정결정내용을 우리시가 수용함에 따라 '19.5.31까지 판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본 소송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기 확보된 예산이 없고,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19.6.1부터 연 15%의 연체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코자 함

2019년 5월 일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참고 2>

예산담당관 예비비 승인 공문(예산담당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

- 재무과-25272(2019.5.9.)호 및 예산담당관-5986(2019.5.13.)호와 관련입니다.
- 재무과 예비비 사용 요청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 사용)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부서 : 재무국 재무과

나. 회 계 명 : 일반회계

다. 승인금액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잔액	예비비 승인 요청액	예비비 승인 시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86,336,423	148,427,048	-	148,127,048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손해배상금 지급	배상금 (305)	배상금 등 (305)	-	-	300,000	300,000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043 (2019.5.14.) 접수 재무과-26056 (2019.5.14.)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25 /전송 02-2133-0819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5)